

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·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7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3년 3월 29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청계천시민위원회는 2005년 복원된 청계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이용사항에 대한 자문을 목적으로 구성되었으나,
- 청계천 복원사업이 18년 경과된 현 시점에서 신규사업 발굴 및 협의사항이 없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미운영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청계천시민위원회와 관련된 제12조(청계천시민위원회 설치), 제13조(회의), 제14조(분과위원회), 제14조의2(소위원회) 조항을 삭제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
다. 협의사항

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대상 없음

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
- 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제외
- 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개선사항 없음
- (5) 시민협력과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- 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관련 규정): 별도 의견 없음
- 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협의사항
- 관련부서 의견조회('22.10.13~10.20.)결과 : 의견없음

라. 기 타

- (1) 입법예고(2022. 12. 29. ~ 2023. 1. 18.) 결과: 의견없음
- 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※ 작성자 :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유이정 (☎2133-3898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·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·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부터 제14조, 제14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.

별지 서식 청계천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12조(청계천시민위원회 설치) ①</u> <u>시장은 청계천의 유지관리 및 청계천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「청계천시민위원회」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청계천 이용·관리를 위한 장단기과제 수립</u> <u>2. 시민과 함께 하는 청계천 이용 추진상황 평가</u> <u>3. 청계천의 오수 및 수질 관리, 물순환시스템 개선 등 생태환경 개선</u> <u>4. 수표교, 오간수문 등 복원</u> <u>5. 그 밖에 청계천 주변거리 활성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 <p><u>② 위원회는 위원장 3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</p> <p><u>③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과 위촉위원 중 호선하는 자 2인으로 한다.</u></p> <p><u>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당연직 위원 : 청계천 업무 관련 실·국·본부장</u>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삭 제></u></p>

2.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
시의원

3. 공원환경, 생태, 자연성 회복, 수질,
도시, 역사 등에 관한 전문지식
및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

⑤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위원은
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
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
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
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
기간으로 한다.

제13조(회의)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

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정기회의는 연 4회 이내로 하고,
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
소집한다.

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2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
있을 때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
으로 개의하고, 참석위원 과반수의
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
간사와 서기를 두되, 간사는 하천관
리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청계천관리
팀장으로 한다.

<삭 제>

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

제14조(분과위원회) ① 위원회의 업무를

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위원의 수를 10인 이내로 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각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장을 둔다.

③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1. 생태·환경 분과위원회
2. 역사·문화 분과위원회
3. 도시·제도 분과위원회

④ 삭제

<삭 제>

제14조의2(소위원회) ① 위원장은 안건의

심도 있는 심의와 분과위원회간의 의견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소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<삭 제>

[별지서식] (신설 2005.09.30)

<삭 제>

청계천시설사용허가신청서			
행사명칭			
사용목적			
사용일시		년 월 일(\) 시 분 ~ 시 분 (시간 분)	
주최자 또는 주최단체의대표자	주소	전화번호 (핸드폰) FAX	()
	성명 (단체명)	생년월일	직업
연락책임	주소	전화번호 (핸드폰)	()
	성명 (단체명)	생년월일	직업
사용인원		사용장소	m ² (평)
행사내용			
<p>서울특별시청계천이용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사용자 (서명 또는 인)</p> <p>서울특별시장 귀하</p>			
<p>☞ 구비서류 : 1. 행사계획서(사용장비, 시간계획 등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) 2. 사용 위치도(현장답사 후 평면도 표시) 3. 시설물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(기타시설물 설치시)</p>			

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·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: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른 비용추계서 제출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본 개정조례안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없음

4. 작성자

- 치수안전과, 방재안전 7급 유이정 (☎2133-3898)